

##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지방자치법」제66조의2 및 「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.

2021년 2월18일

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장



### 1. 제정이유

지역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,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를 정의(안 제2조)
- 나. 구청장의 책무사항을 규정(안 제3조)
- 다.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지원 계획 및 세부사항을 규정(안 제4조)
- 라. 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사항을 규정(안 제7조)

### 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

#### ※ 제출의견 보내실 곳

- 주소 :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(을지로6가 18-14) 의회사무과
- 전화 : 02)3396-8157    팩스 : 02)3396-9055
- E-mail : queen@junggu.seoul.kr

## 서울특별시 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노인복지법」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 도모·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통해서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노인”이란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2. “경로당”이란 「노인복지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으로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.
3. “회원”이란 구에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른 주소지 또는 「민법」에 따른 주소지에 근접한 경로당에 가입한 만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.

**제3조(책무)** 서울특별시 중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노인에 대한 복지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등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**제4조(지원계획 및 세부사항)**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경로당의 운영비 및 냉·난방비
2.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·운영비

3. 경로당 환경개선 및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비

4. 자원봉사 등 지역 활동에 필요한 비용

5. 경로당의 시설 유지 관리 및 물품 지원

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회원 수, 시설규모,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.

**제5조(개방형 경로당 시설운영)** 경로당은 노인의 권익 신장과 복지증진 및 봉사활동 등 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아래와 같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.

1. 지역발전을 위한 자원봉사활동 및 일자리 사업 연계 등

2. 노인여가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건강관리, 건전한 취미생활을 위한 사업 등

**제6조(정산 등)**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며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.

**제7조(보조금의 반환)**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.

1. 법규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
2.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

3.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

**제8조(결연사업)**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**제9조(안전점검)** 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구립경로당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·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는 구청장 혹은 관할 지역 동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.

**제10조(실태조사)**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

문 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.

**제11조(준용)**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」 등 관계 규정을 준수한다.

**제12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